

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(운전) 채용계획 공고

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(운전)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. 5. 28.

서울특별시 동작구인사위원회 위원장

1. 채용분야 및 인원

채용분야	채용직급	채용인원	근무부서	담당직무
운 전	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	2명	본청 및 동주민센터 (실근무지는 추후 결정)	· 행정차량 운행 및 관리 · 소속부서(동) 행정업무 지원 · 기타 업무분장에 따라 지정된 업무

2. 법령상 근거

- 가.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, 제26조, 제27조
- 나.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, 제21조의3, 제38조의 16
- 다.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(행정안전부 예규 제98호, '19.12.26.)
- 라. 지방공무원 인사규칙(표준안)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규칙

3. 응시자격

- 가.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 각 호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(공고일 현재)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※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나. 응시연령 : 만 18세 이상 (2002.12.31. 이전 출생자)

다. 성별 및 거주지 : 제한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)

라. 직무분야 자격요건

자격요건(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)	
‘제1종 대형운전면허’ 취득 이후 대형승합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형승합자동차 :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, 길이·너비·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,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(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기준) ○ 군(軍) 복무기간 중 대형버스 운전경력은 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되며, 군 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의 운전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○ 우대사항 : 행정기관 근무 유경험자, 워드·컴퓨터활용능력 등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	
증빙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사본 1부 ② 경력증명서 1부(사업자등록업체 발행, 대형차량 1년이상 운전경력 / 서식별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별첨서식으로 제출하되, 사업체 자체 발행서식 제출 시 근무기간과 담당업무, 운행차종 및 승차인원 등 해당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함(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) ③ 운전경력증명서 1부(경찰서 발행)

※ 근무경력은 전일제 기준으로 시간제근무시 전일제 근무 시간기준으로 계산
(ex 1일 4시간 1년 근무 = 전일제 6개월 근무경력과 같음)

4. 보수수준 : 기본연봉 20,932천원 외 각종수당

- 가. 일반직공무원 9급 7호봉 상당 봉급월액의 근무시간 비례 책정
- 나. 연봉 외 각종수당은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
5. 시험방법

가. 1차 서류전형

- 제출서류 구비 및 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·경력요건 적격 여부 등 서면심사
- 단,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, 우대사항 및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(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, 경력과 담당예정 업무와의 연관성 등)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 내 합격자 선발 가능

나. 2차 면접시험

-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, 인성 등 역량 종합평가
-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, 면접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시 안내

6. 응시요령 및 시험일정

가.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0. 6. 9.(화) ~ 6. 11.(목), 3일간, 09:00~18:00
- 접수장소 : 동작구청 3층 행정지원과 인사팀(방문접수 및 우편접수)
 - 우편접수는 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
(06928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, 동작구청 3층 행정지원과 인사팀)
 - 동작구 수입증지(5,000원)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
 - 대리접수,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
나.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: 2020. 6. 18.(목)

- 동작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별도 통보

다. 면접시험 : 2020. 6. 22.(월) ~ 24.(수) 기간중 1일 예정

- 면접시간 및 장소는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라.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: 2020. 6월중

- 동작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

-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
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,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위원회 채용
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

-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,
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추가
임용할 수 있음

7. 제출서류

가. 응시원서 1부

나. 이력서 1부(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경력사항만 기재)

다.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

라.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

- 담당업무내용, 운행차종, 기간 등을 확인·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
-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, 발급확인자의 성명(연락처 포함)이 있어야 함
- 증명서 미제출된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함

마. 운전경력증명서 1부(경찰서 발행)

바. 1종 대형운전면허증 사본 1부

사. 전산관련 자격증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)

아. 개인정보제공 및 자격요건검증동의서 1부

자.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

- 미제출시 병역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 1부 제출

차. 응시수수료 : 5,000원(동작구 수입증지, 동작구청 1층 민원여권과 구입)

8. 기타 유의사항

- 가.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나.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,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반환이 가능합니다.(방문 수령만 가능, 응시수수료 반환 불가)
- 다.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및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라.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,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마.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바.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면접결과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.
- 사.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포함)에는 원서접수일,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아.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동작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- 자.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는 경우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함을 유의 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
(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,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8조의5)
- 차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(☎820-1312)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